

속 초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 관 의 장
람	

공  보

제1021호 2016년 10월 21일(금)

규 칙

- 속초시 체육청소년시설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

공 고

- 건축허가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 공고 10

속초시체육청소년시설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16년 10월 21일

속 초 시 장

인

속초시 규칙 제 1365 호

속초시체육청소년시설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

속초시체육청소년시설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속초시체육청소년시설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”을 “속초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”으로 한다.

제1조 중 “「속초시체육청소년시설관리운영조례」”를 “「속초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」”로 한다.

제2조 중 “늦어도 징수익일”을 “징수한 다음 날”로, “불입하여야”를 “납입하여야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제4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4조에 따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1항에 따라”로, “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”을 “별지 제2호서식인”으로 한다.

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7조(사용료의 감면요율 등)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요율은 별표와 같다.

② 조례 제8조제1항제7호의 그 밖에 특별한 사유란 국제적인 행사를 말하며 사용료의 감면요율은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.

제10조의 제목 “(운영자문위원회 구성)”을 “(운영위원회 구성)”으로 하고, 같

은 조 제1항 중 “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자문위원회”를 “조례 제16조의 운영위원회”로 하며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.

같은 조 제3항 중 “운영자문위원회”를 “운영위원회”로, “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무소운영”을 “청소년수련시설 관리사무소 운영”으로, “문화체육과장, 여성가족과장”을 “청소년수련시설 담당부서장”으로 한다.

별표 제6호 중 “어린이”를 “아동”으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, 제2호서식, 제3호서식, 제4호서식, 제7호서식 및 제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청소년수련시설 사용허가신청서

신 청 인	주 소							
	성 명 (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 단체명과 대표자성명)			전화번호				
				생년월일				
사용 목적								
사용 내용								
경기·행사명								
사용 기간								
임원 또는 지도위원		임 원 명	사용자 명					
입 장 권		특별권 원 매			초대권 원 매			
		일반권 원 매			단체일반권 원 매			
		군·경, 학생권 원 매			기 타 원 매			
기 타								
사 용 료		원 납부년월일 . . .						
「속초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 청 인 (인)								

속초시장 귀하

청소년수련시설 사용허가서

신 청 인	주 소			
	성 명		전화번호	
사용목적				
허가시설 및 허가내용				
허가기간	년	월	일	시부터 시까지
입장권 또는 기 타				
허가조건				
경기·행사명				
「속초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함. 년 월 일 속 초 시 장				

입 장 권

입장권원부	입 장 권
No.	No.
숙초시 청소년수련시설	숙초시 청소년수련시설 입장권
일금 원 (오전, 오후, 야간)	일금 원 (오전, 오후, 야간)
청소년수련시설 관리사무소장	청소년수련시설 관리사무소장

이 용 권

이용권원부	이 용 권
No.	No.
숙초시 청소년수련시설	숙초시 청소년수련시설 이용권
일금 원 (오전, 오후, 야간)	일금 원 (오전, 오후, 야간)
청소년수련시설 관리사무소장	청소년수련시설 관리사무소장

[별지 제7호서식]

검인신청서

속초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
 까지 실시예정인 행사(경기대회)시에
 입장권 및 임원증에 대한 검인을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.

1. 입 장 권

특별권	원권	매
일반권	원권	매
군·경, 학생권	원권	매
초대권	원권	매
단체일반권	원권	매
기 타	원권	매

2. 임원증 및 선수증

임원증	매
선수증	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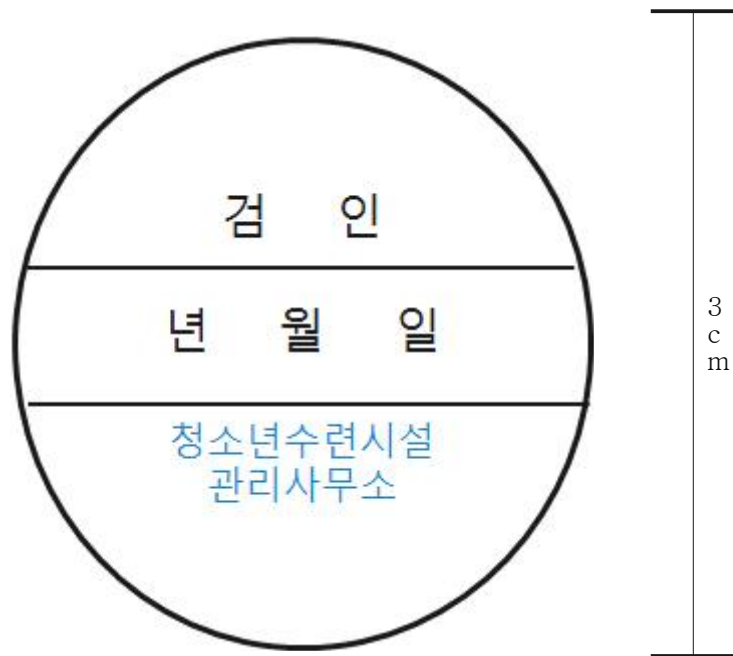
년 월 일

신청자 주 소 :

성명 :

속초시장 귀하

검 인



◇ 개정이유

「속초시체육청소년시설관리운영조례」가 「속초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」로 개정(시행, 2016.1.1.)됨에 따라 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의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.

건축허가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 공고

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나목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 공고 합니다.

2016년 10월 21일

속 초 시 장

가. 공 고 명 : 건축허가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 공고

나. 도로위치 : 도로지정 조서 참조

다. 공고기간 : 2016. 10. 21. ~ 11. 10. (21일간)

라. 도로지정 조서

소재지	지번	지목	면적(㎡)		소유자	건축위치 건축물 용도 건축허가번호 (건축허가일)	비고
			공부 면적	지정 면적			
계	2필지		155	155			건축주 : 김지연
강원도 속초시 도문동	1569-54	대	121	121	(주)해읍	속초시 도문동 1569-5번지 단독주택 2016-건축디자인과 -신축허가-제84호 (2016. 7. 20.)	
	1569-57	대	34	34	지희숙	※설계변경일 (2016. 10. 20.)	

마. 공고방법 :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판

바. 관계도서 : 속초시청 건축디자인과 비치(열람가능)

사. 문의사항 : 건축디자인과 건축행정팀(033-639-2256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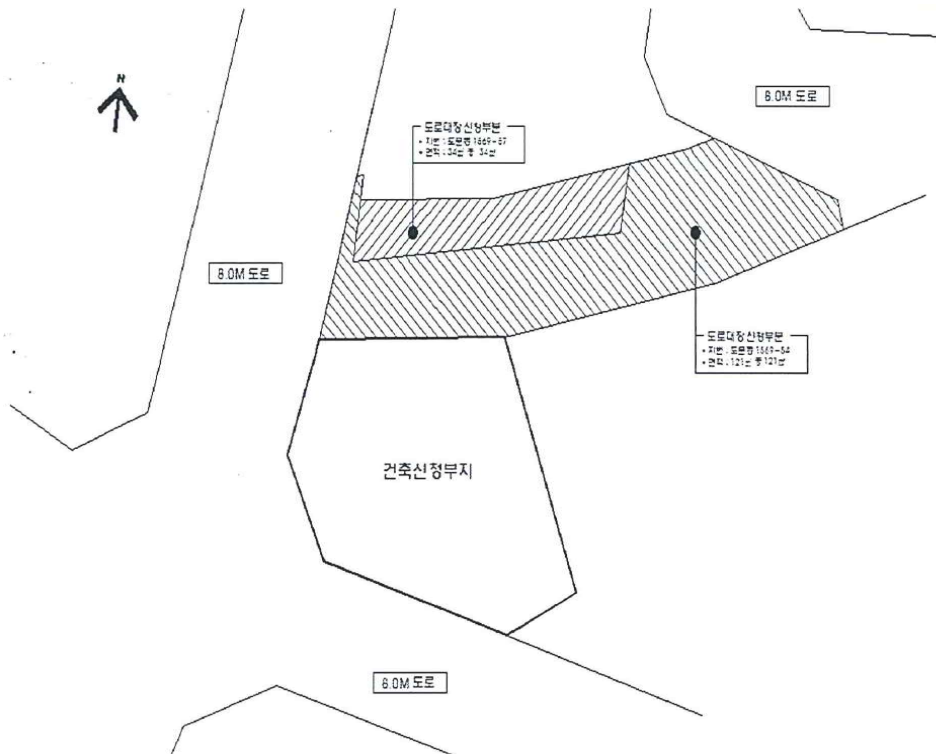
위치도 및 현황도

- 위치도 및 현황도를 작성합니다.



위 치 도 숙초시 도문동 483, 481-4번지

축 척 NONE



도로 지정 현황도

축 척 NONE